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보 건 의 료 인 력 지 원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

적을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9조)

1)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사업 및 보건의료인력의 상담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두고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함.

2)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7. 23. ~ 9.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취업상황의 신고)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력지원전문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54